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용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2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1일

발 의 자 : 유 용(1명)

찬 성 자 : 오현정, 문장길, 김춘례
안광석, 노승재, 경만선
오한아, 이광성, 김정환 의원
(9명)

1. 개정이유

- 매장 중심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가 묘지 확보와 관리의 어려움, 높은 장례비용 등을 이유로 급격하게 화장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,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봉안시설의 신설이 어려운 실정임.
- 이에 따라,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종교집회장의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유골수 규모를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을 따르도록 하여 봉안당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제한적으로 관내 봉안시설을 확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종교집회장의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골수를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함(안 제27조제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및 별표3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봉안당(유골 750구 이하에 한한다. 다만,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)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봉안당(유골 750구 이하에 한한다).</p> <p>5.~10. (생략)</p>	<p>제27조(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봉안당(유골 750구 이하에 한한다. <u>다만,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</u>)</p> <p>5.~10. (현행과 같음)</p>